

2022년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화) 제1차 예비·신규 인증 공고

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·시행(’15.6.4.)에 따라 2022년 신규·예비 인증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. 3.

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장

- 신청기간 : 3.2.(수)~4.29.(금) (*일정 변동 될 수 있음, 접수 마감 후 1주간 서면·현장실사 실시)
- 신청대상 : 1) 예비인증 대상 : 대상주체 / 사업장 입지지역 / 주원료 형태(자가, 계약재배, 지역매입)의 요건을 충족하며, 사업자등록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체 ▶ 4가지 충족하는 경영체
2) 신규인증 대상 : 대상주체 / 사업장 입지지역 / 주원료 형태(자가, 계약재배, 지역매입) / 사업성과(2년 경과, 43백만원 이상인 경영체) ▶ 4가지 충족하는 경영체

□ 인증 자격요건

구분	세부내용
대상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상주체 여부 -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소상공인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, 중소기업, 1인 창조기업 등
사업장 입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촌지역 입지여부 :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규정된 농촌지역
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(품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촌융복합형태 여부(1차×2차), (1차×3차), (1차×2차×3차) ■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- 사업계획서(서식) 주생산품 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기재,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(예 : 사과(사과즙, 사과젤리 등)) *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 ■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, 계약재배,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(국산)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 이상으로 하되, 다른 사도와 접해있는 사군의 경우 인접 사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-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, 매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산서 등 증빙 확인
사업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'최근 2개년 평균 농가 소득 43백만원' 달성 및 증빙 -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: 43백만원(산출 근거: '19년 41,182천원, '20년 45,029) - (매출액)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)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※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※ 예비인증 신청의 경우, 사업성과는 당해연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- (일자리) 4대보험 신고서류, 일용직 신고서,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- (지역농산물) 자가생산 증명서, 계약재배 협약서,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

□ 인증 신청서류 (www.제주6차산업.com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)

- ▶ 인증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(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),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의 경우), 사업자 등록증, 국가에서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일자리 증빙서류, 지역농산물 증빙서류 등

□ 인증신청 접수 :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직접제출

- 접수방법 : 직접 제출 ⇒ 제주시 첨단로 213-65, 2층 김승주팀장(T.064-722-7917)
- 접수기한 : 2022.4.29.(금) 18:00 도착에 한함

□ 공고 관련 추진절차

진행	①예비·신규 인증 안내	②소규모그룹컨설팅*	③예비·신규 접수	④서면·현장실사	④적격심사 및 인증 공고
시기	3월~4월	3월~4월	4월29일(금)	5월 중	6월 중
내용	예비·신규 절차·접수·심사 기준 등 안내	인증 관련 컨설팅 (1회 추가 필요시 현장코칭 1유형 신청)	인증 사업자	접수 경영체 대상 서면·현장실사 단, 예비의 경우 센터 자체심사로 대체	70점 이상 경영체 적격심사 및 최종 인증 공고

*인증설명회는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설명회로 개최 예정(www.제주6차산업.com 공지사항 참조)

*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 등 변경될 수 있음

□ 문의처 :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김승주 팀장

전화 : 064-722-7917 / e메일 : stormand@jeju6th.kr / Fax 064-722-7919